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2023. 7.

금 융 위 원 회

## 1.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가격상한(안 제28조의9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, 동법 시행령에 대상주택 가격 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, 노후주거·소득 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한가격을 현재 보다 확대하기 위함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제1항에서 위임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함 (현재 9억원)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더 많은 가구가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고령층 노후 주거·소득 안정 효과 개선 기대

### 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해당 사항 없음

### 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사항 없음